

제 6 장 | 세무행정

제 1 절 세무행정 관리

제 2 절 지방세입 관리

제 3 절 과년도 체납세 정리

제 4 절 세외수입 관리

제 5 절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리



제1절 세무행정 관리

1. 세입환경

가. 과세물건 현황

- 토 지 : 65.2km² 【전 1.0 / 답 3.8 / 임야 41.5 / 대지 6.8 / 공장 0.5 / 기타 11.6km²】
- 건축물 : 88,363건 【주 거 용 : 70,523건, 일 반 용 : 17,840건】
- 차 량 : 82,478대 【승용 62,775 / 승합 4,818 / 화물 14,254 / 기타 631】
- 법 인 : 2,226개소 【건설 493 / 제조 512 / 서비스 338 / 여객,화물 145 / 기타 738】
- 기 타 : 선박 【49척】 , 골프회원권 【2,352명】 , 면허건수 【15,997건】

나. 세무공무원 기구 및 인력

- 기 구 : 7담당
- 담당별 분장사무
 - 세 무 관 리 : 세정기획 및 총괄, 세무조사, 구세(감면)조례
 - 재 산 세 : 재산세 과징, 현년도 체납액 정리, 세표, 중부세관련 업무
 - 취 득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징 및 현년도 체납액 정리
 - 주민자동차 :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과징
 - 세 외 수 입 : 세입금관리 및 통계, 지방세 소인, 과오납금 환부
 - 체 납 정 리 :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납세증명 민원
 - 과 표 평 가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과세표준액 결정
- 인 력 : 42명
- 구성현황 : 행정 2(5급 1, 6급 1), 세무 37(6급 8, 7~9급 29), 기능 3

구분 \ 직급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 원	42	1	8	13	17	2	1
현 원	42	1	9	23	4	2	3
증 감	0	0	1	10	△13	0	2

2. 지방세 과징 일반

가. 조세의 분류

조세	지방세	구 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보통세
		광역시세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보통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국 세	내국세, 관세	국가 일반재원 조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개발재원 조달		

나. 구민 1인당 담세액[1인당 담세액=결산시점의 징수액÷결산시점의 인구수]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인 구 수(명)	255,419	254,720	255,798	251,651	255,240
지방세액(천원)	158,201,436	150,427,311	146,678,116	110,124,589	115,818,977
담 세 액(천원)	619	591	573	437	454

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 부 방 법		납 기	비 고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분 신고납부	◆ 등기·등록전	구세	
		정기분 보통징수	◆ 매년 1. 16. ~ 1. 31.		
		수시분 신고납부	◆ 면허증서 받기 전		
레저세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 매년 7. 1. ~ 7. 31.	구세	
	균등분	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재산세	주택·건축물분	보통징수	◆ 매년 7. 16. ~ 7. 31.	구세	
	주택·토지분	보통징수	◆ 매년 9. 16. ~ 9. 30.		
자동차세	소유분	제1기분	보통징수	◆ 매년 6. 16. ~ 6. 30.	
		제2기분	보통징수	◆ 매년 12. 16. ~ 12. 31.	
	주행분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구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소득분	소득세분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분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반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특정부동산	보통징수	◆ 재산세 납기와 같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시		
	보통징수		◆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시		

3. 지방세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법인, 백만원)

조사계획		조사 법인	추징 계		방문조사		서면조사		비율 (B/A)%
법인	세액(A)		법인	세액(B)	법인	세액	법인	세액	
49	584	49	30	407	9	243	21	164	70.0

나. 세무조사 운영

- 부동산 취득 법인 및 3년 이내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및 탈루 취약 부분 기획조사로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
-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른 조사시기 조율로 법인 운영의 안정화

4.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 근거규정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08.7.제정)

가.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2012.1.1기준 / 최근 3년간('09~'11년) 매년】

- 법 인 : 납부건수 3건이상, 납부실적 2,000만원 이상
- 개 인 : 납부건수 3건이상, 납부실적 200만원 이상

나. 우리구 성실납세자 선정 결과 : 전체 771명(법인 54명 / 개인 717명)

- 최고액 납세자
 - 법 인 : (주)000, 3년간 총 납부액 8,298백만원
 - 개 인 : 김 〇 〇, 3년간 총 납부액 1,973백만원
-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내용
 - 부산은행, 농협 등 市 금고를 통한 대출·예금금리 우대 적용
 -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시 보증수수료 0.1% 경감

5.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 운영

가. 입주민을 위한 「세무현장민원실」 운영

- “장전동 벽산블루밍APT” 준공 인가에 따른 입주민 불편 최소화
- 납세자 우선의 찾아가는 친절 서비스로 품격있는 세정운영 지향

나. 납세자와의 소통을 위한 「지방세 사랑방」 운영

-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전문 On-Line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한 맞춤형 지방세 소통 창구 역할

제2절 지방세입 관리

1. 지방세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현년도 지방세	151,022	161,342	156,349	103.5	96.9			
지 방 세	현 년 도	시 세	시세 소계	119,094	127,677	123,496	103.7	96.7
			취득세	37,169	41,509	41,181	110.8	99.2
			주민세	793	926	785	98.9	84.7
			자동차세	12,939	15,057	13,572	104.9	90.1
			레저세	19,450	18,523	18,523	95.2	100.0
			지방소득세	27,881	29,222	27,649	99.2	94.6
			지역자원시설세	2,778	2,880	2,798	100.7	97.1
			지방교육세	18,084	19,560	18,988	105.0	97.1
		구 세	구세 소계	31,928	33,665	32,853	102.9	97.6
			등록면허세	3,963	4,345	4,317	108.9	99.4
재산세	25,495		26,705	25,963	101.8	97.2		
주민세	370		390	378	102.3	97.0		
지방소득세	2,100		2,225	2,195	104.5	98.6		

2.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

가. 시세입 동향

- 부동산 거래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취득세입의 장기 보합세 유지
- 점진적인 경기활성화에 따른 신고대상 법인 증가로 세입의 소폭 증가
- 자동차세, 레저세 등 기타 市세입은 예년대비 평균 진도비 유지

나. 구세입 동향

- 공시지가 변동외의 세액 증감 요인 없어 재산세입의 보합세 유지
- 면허세 및 주민세, 지방소득세입 또한 뚜렷한 증감없이 보합세 유지

제3절 과년도 체납세 정리

1. 체납세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지방세	과년도 총계	1,524	6,623	1,851	121.5	28.0
	과년도					
	시 세	1,224	4,429	982	113.8	22.2
	지방교육세	-	1003	410	-	40.9
구 세	300	1,191	459	153.1	38.6	

2.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적

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시책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액정리 특별전담반 구성 운영 : 9,394건 1,389백만원 전담
- 지방세 고액체납자 전담팀 구성 운영 : 1,197건 575백만원 전담 (262백만원 정리)
- 체납차량 번호판 상설영치 기동팀 운영 : 2,252대 801백만원 영치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기 간 : 지방세, 세외수입 연2회(5~6월, 11~2월)
- 내 용 :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독려,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제고

- 직장인 체납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직장확인 및 급여압류
- 금융자산 압류 : 금융연합회 계좌조회 및 예금압류
- 국제환급금압류 : 세무서 국제 환급금 발생여부 조사 및 채권압류

나.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적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

- 독 축 장 발 부 : 371,372건 851백만원 징수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 7,965건 968백만원 징수
- 차 량 번 호 판 영 치 : 2,013대 651백만원 징수

지방세 행정규제(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 408건 78백만원 징수

제4절 세외수입 관리

1. 세외수입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세 외 수 입	세외수입 총계	40,251	67,910	54,947	136.5	80.9	
	현년도	시세외	593	1,097	1,039	175.3	94.7
		구세외	38,523	54,938	52,812	137.1	96.1
	과년도	시세외	35	440	29	82.9	6.6
		구세외	1,100	11,435	1,067	97.0	9.3

2. 세외수입 세입운영

가. 세외수입 세입 극대화를 위한 추진시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극 운용(과태료 체납자)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최고 77%)
 - 체납자 체납내역 신용정보기관 등록(1,000만원 · 1년이상 체납)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500만원이상 체납)
-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처분
 - 부동산 공매예고로 자진납부 유도
- 직장인 체납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 확인 및 급여압류
-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년4회) 개최 및 부서별 체납정리실적 평가
- 분임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체납처분 기법 교육 실시
-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시스템 도입

나.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

- 재산압류 : 부동산 431건 209백만원, 차량 43,033건 1,998백만원
- 예금 압류 및 환가 : 172건 177백만원 징수
- 급여 압류 및 환가 : 2,642건 225백만원 징수
- 과년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100만원이상) 세무과내 전담 징수체계 구축 운영

다. 세외수입 과징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 세외수입 전자수납의 확대 ⇒ 2012년부터 세외수입 전과목 전자수납체계 구축
- 세외수입 징수절차법(안) 제정 ⇒ 2013년중,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법적 근거 마련

제5절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리

1.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조사 및 산정		공 시		비 고
	주택수	주택가격	주택수	주택가격	
2012년	17,940	1,567,350	16,916	1,527,541	
2011년	18,041	1,474,667	17,014	1,437,115	
증감비율	-0.5%	6.2%	-0.5%	6.2%	

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공시 체계 구축

- 2012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 : 총 17,940호 산정 16,916호 공시
- 기타 물건 가격 조사 : 건물 시가표준액, 골프회원권 등 10종
- 2012년 차질 없는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추진사항
 - 주택특성 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 2회(1.1기준, 6.1.기준)
 - 전년대비 10%이상 가격 증감 주택 조사 및 분석 : 총420호
 - 비교표준주택 선정 : 807호
 -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 총2회
 -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총15건
- 주택가격 열람 민원을 위한 편의시책
 - 주택가격현황도면을 활용한 입체적 민원서비스 제공
 - 주택가격 민원상담 전용 창구 운영 : 3회, 3개월간 운영
 - 재산세 과징과 연계한 민원처리 일원화로 대민 신뢰도 제고

3. 주택가격 산정체계의 효율적 개선

- 정확한 부동산 가치를 적기 반영하는 평가체계 개선
- 건물 과표의 수시조정을 통한 실거래가의 적시 반영
- 시설물 및 기타 물건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 도면 전산 처리 및 항공·3D 영상자료 활용으로 효율성 제고